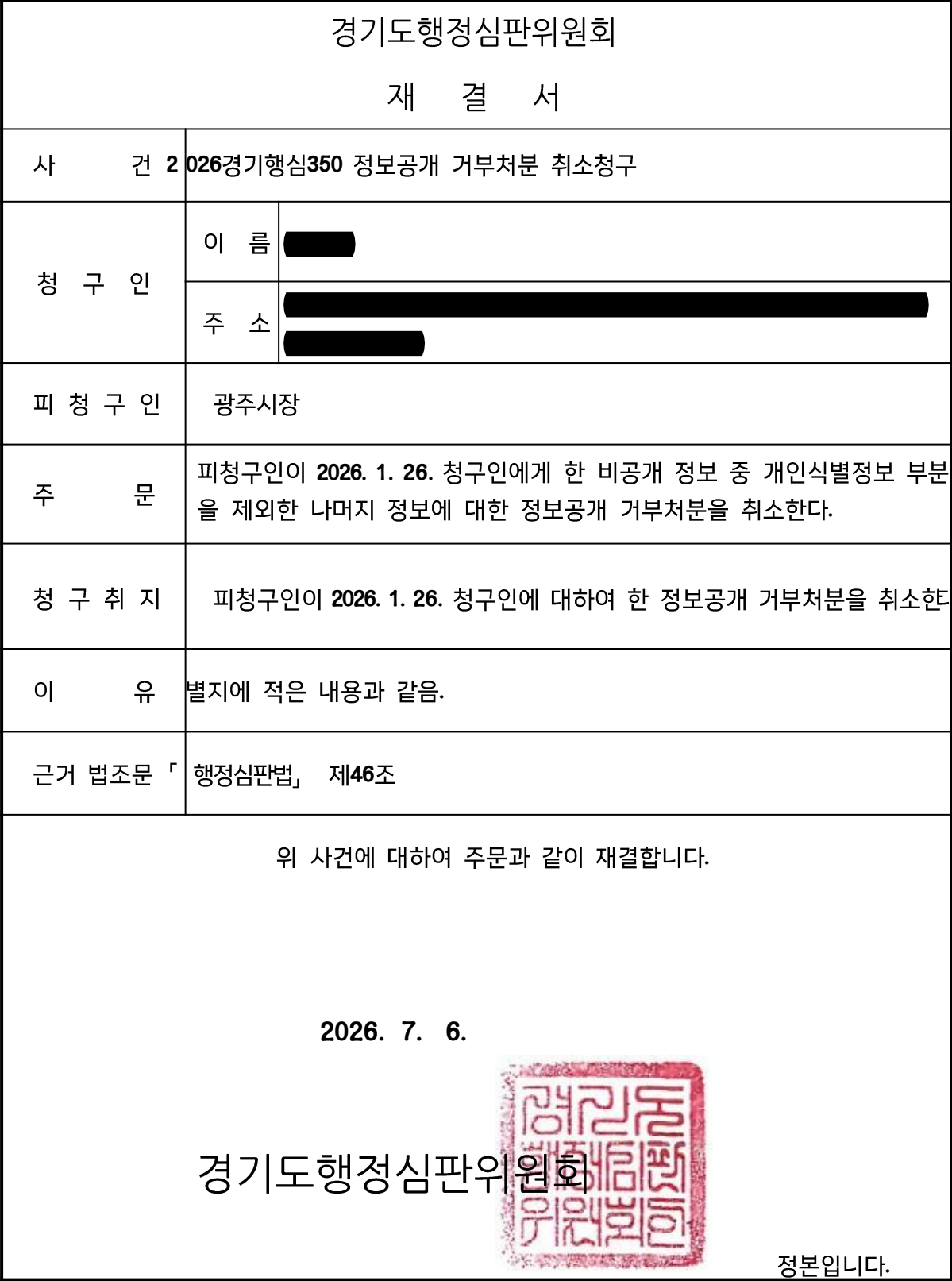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① 사 건	2026-0035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REDACTED]	
	③ 주 소	[REDACTED]	
선정대표자·관 리인·대리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 구인	광주시장	① 참가인	
⑧ 주 문	별지 기재와 같음		
⑨ 청 구 취 지			
⑩ 이 유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2026. 7. 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안내말씀> 귀하께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각 지방법원)에 위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거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6. 1. 9. 피청구인에게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16-3번지 상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건에 대한 건축주의 의견제출서’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및 최종답변서에서 타 용도라는 해석의 근거(국토교통부 지침 및 건축법, 판례 등)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은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내부 검토중에 있는 내용과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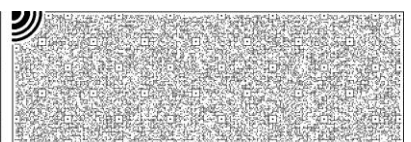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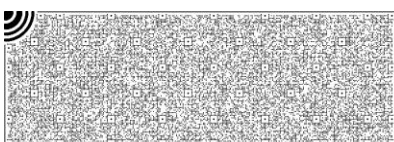
2. 당사자 주장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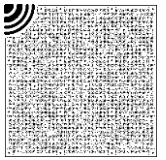
가. 청구인 주장

- 1) 피청구인은 열미리 416-3 건축물에 대하여 2025. 4. 17.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 하였고, 이후 2025. 5. 27. 건축주 의견제출을 거쳐 기존 위반 판단을 종결하였다. 이는 의견제출서가 위반 여부 판단을 변경한 핵심 근거 문서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동일 사안에서 현장조사서 등은 개인정보 마스킹을 전제로 부분공개 하면서, 판단 전환의 직접적 근거인 의견제출서만을 ‘내부검토·민원’ 이라며 전면 비공개하였다. 이는 부분공개 원칙 및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행정처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어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의 문서로서 단순한 내부 검토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이미 현장조사 완료, 위반 판단 종결 상태로서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행정의 공정 수행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 판단의 근거 자료로서 공개 필요성이 높고, 설령 일부 보호 필요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부분 공개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이 사건 정보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민원사항)을 접수한 문서이며, 2026. 1. 7. ○○○○청문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건축과 합동 점검한 사항으로 추후 시달 사항을 전달받을 때까지 적층식 랙의 적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건축법 위반 적정여부)에 있는 사항에 해당 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또한,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하는 것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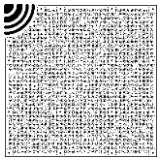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 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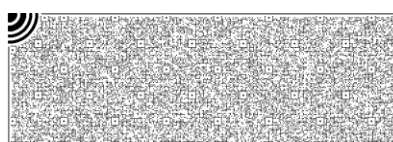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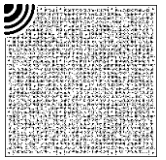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





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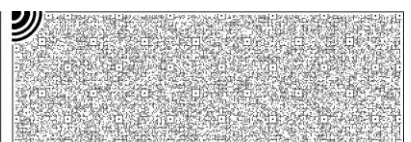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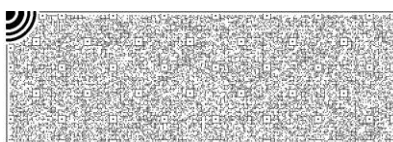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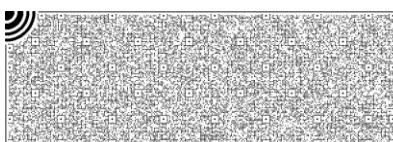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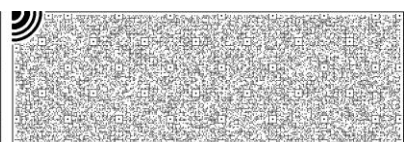
- 가) 피청구인은 **2025. 4. 17.** 청구외 와○○○○○○○○주식회사, 오○○에게 곤지암을 열미리 **416-3**번지 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한을 **2025. 5. 19.**까지로 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다.
- 나) 청구외 와○○○○○○○○주식회사는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6. 1. 9.** 피청구인에게 광주시 곤지암을 열미리 **416-3**번지 상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건에 대한 건축주의 의견제출서 및 최종답변서에서 타용도라는 해석의 근거인 국토교통부 지침 및 건축법, 판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2026. 1. 26.** 국토교통부 지침은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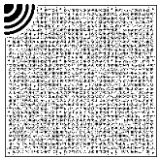
2) 행정심판의 대상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일자를 **2026. 1. 9.**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자료를 통하여 처분 일자가 **2026. 1. 26.**로 확인되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2026. 1. 9.**’을 ‘**2026. 1. 26.**’로 직권 경정한다.

3) 관련 법리

-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





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구합314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5376 판결).

-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민원의 내용 및 답변 등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아니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43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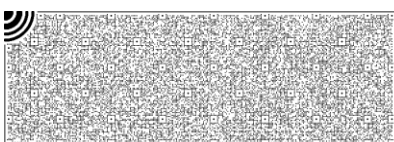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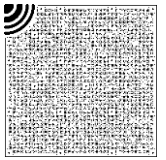
이 사건 정보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하여 건축주인 와○○○○○○○○주식회사가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이다. 피청구인은 2026. 1. 7. ○○○○청문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건축과 합동 점검한 사항으로 추후 시달사항 전달을 받을 때까지 적층식 랙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25. 4. 17.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하여 건축주가 2025. 5. 12. 제출한 의견제출서로서, 피청구인은 2025. 5. 27. 건축주 의견제출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행정처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어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의 문서로서, 단순한 내부검토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 통지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3구합51663 판결).

-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이미 현장 조사가 완료되고 위반 판단이 종결된 상태로서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 단순한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동일 사안에서 현장조사서 등은 개인정보 마스킹을 전제로 부분 공개하면서 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이 사건 정보만 전면 비공개 하였는바, 이는 부분공개 원칙에도 반한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인 의견제출서에는 건축주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 내용 부분은 건축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및 의견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판단을 반복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된 문서로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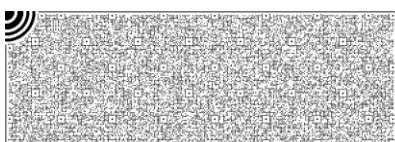
나)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개인식별정보 등이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마스킹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부분 공개 원칙에 위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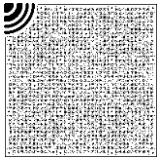
5)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6호의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부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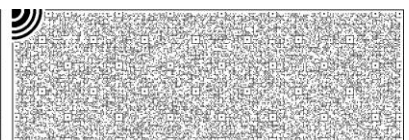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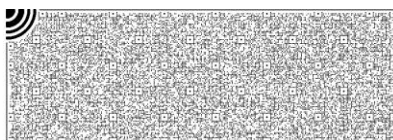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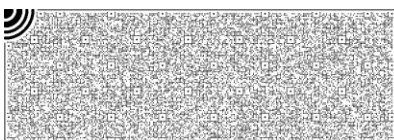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26.07.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스마트폰으로 ④측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서진위검증 및 음성안내 앱 설치로 이동됩니다.
1. 문서진위검증 : 앱 실행 후 하단 QR코드 3개 스캔
 2. 음성안내서비스 : 앱 실행 후 ④측 상단 QR코드 스캔



알려드립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일자 및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결일자 : 2026. 7. 6.

2. 기타 안내사항

가. 이 재결의 효력은 귀하께서 재결서를 받으신 때부터 발생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

☞ 우편 송달의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짜는 재결서 우편봉투 겉면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송달인 경우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 해당문서 송달내역 확인일자]에 재결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온라인 송달의 경우 재결서 등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재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4조제4항)

나. 기각(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

☞ 귀하께서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를 피고로 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예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재결서 하단에 기재된 날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되며, 그 이후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다.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 ☞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인용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귀하께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그 밖에 행정심판 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상담 메뉴(민원신청 아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